일본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개요

- 「한・일 MPA전문가 회의자료 인용」-

제품안전과 전기사우관 박윤수 02:507-7434 parkys@ats.go.kr

한・일 전기용품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 10월 한・일 정상회담시 MRA 협상개시를 합의한 이후, 양국 제도설명회('99.7, '99.11, 2회), 실무회의('00.4), 전문가회의('00.4, '01.12, 2회) 등을 통해 계속 MRA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일본축의 소국적 입장으로 현재 한・일 정 대표준회의에서 KS/JIS마크간 상호인정문제만 계속 논의되어 왔다.

최근 'C2, 3월 한 · 일 정상회담(서울)시 상호인정 분야협력 가축화 합의에 따라 일본측에서 한 · 일 전 기용품 안전인증 MRA 전문가 회의(정보통신기기분 야 포함)개최를 제의, 2002, 7, 30 산업자원부 대회의 실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동 회의시 일본측으로부터 제시된 MRA 자료를 참고로 일본 전기용품 안전인 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한·일 전기용품 MRA(Mutual Recognition 1.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 주요. greement)는 '93,10월 한·일 정상회담시 MRA

가. 전기용품의 등급(법 제2조)

- 특정전기용품(정령 제1조의2):112 개품목
 - 특히 위험 및 장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계품
- 특정전기용품이의 계품(정령 계1조): 340 개 품목
 - 위험 및 장해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 는 계품

나. 사전 시장 평가기준

- 일본내의 계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요구
 사항
 - 사업개시신고(법 제3조)

일본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기요

일본의 건가용품 안전원증제도는 2001.4.1부터 건가용품안건빛(구 건가용품취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정검사가관(국내) 및 중인검사가관(외국) 지정기준, 원증아크 변경, 안전원증대상건가용품의 조정, 제조·수업사업자신고방법 등 건면 개정됨

-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 자기적 합성선언
- 시험실시 및 기록 유지(법 제8조)
- 제3자 적합성 평가
- 특정전기용품에 한함(법 제9조)
- 표시요구사항(법 제10조)
- · PSE 마크가 없는 전기용품 판매 금지 (법 제27조)
- · 경계산업성령에 의해 규정된 특별 요구 사항(경계산업성령 제17조)

특정전기용품의 표시(112 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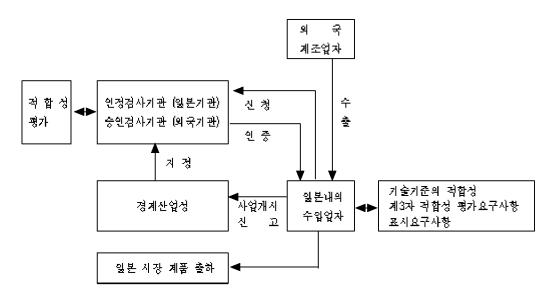
특정전기용품이와 표시(340 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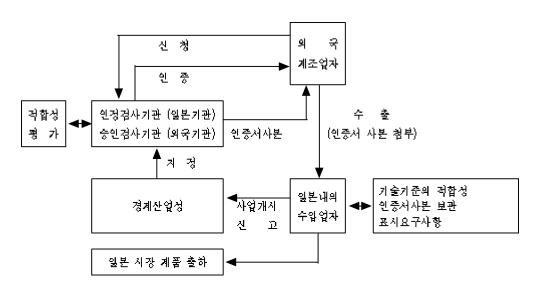
※ 외국제조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별도로 규 계하지 않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외국제조업자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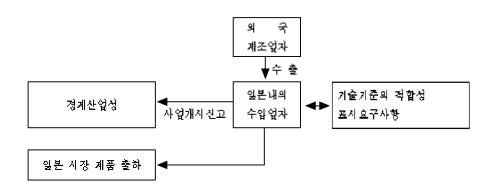
사례 1)



사례 2)



〈특정전기용품이외 제품을 제조하는 외국제조업자 처리?



3.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가. 인정/승민검사기관 기정절차 (법

다. 사후 시장 평가기준

- 개선명령(법 제11조)
- 표시금지(법 제12*조*)
- 사용계한(법 제27조)
- 위험등 방지명령(법 제42의 5조)
- 보고서 계출명령(법 계45조)
- 출입검사(법 제46조)
- 전기용품의 제출명령(법 제**4**6조의2)
- 벌칙(법 제57조, 58조, 59조, 60조, 61조)

2.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 주요 내

가. 기술기준

주가지의 기술기준으로 구분(기술기준 세취)

- 기술기준 세취 1 기술기준 세취 부록으로 규정된 일본 기술 기준
- 기술기준 세취 2 지침 세취으로 규정된 국제규격(IEC 등)과 부합화한 규격

관변 시험설비/장비 보유1 전 합 성 평 가 기 관 ———

다. 적합성평가방법(경계산업성령 계14조)

○ 공급자는 경계산업성형 및 별<u>취으로 규정된 [◆]</u>청

나. 시험설비/장비 요구사항

인 정 점 승 인 점

○ 인정/승인검사기관은 생산 및 시험설비가 요 구사항의 적합성 확인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 합성평가를 실시

라. 인증서내용(경계산업성령 계16조)

- 인정/승인검사기관명
- 신청자의 개인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 특정전기용품의 형식구분
- 특정전기용품 계조업체명 및 공장 또는 사업 장의 주소
- 시험방법
- 생산 및 시험설비/장비의 적합성 여부
- 인증날짜

마, 인증서 유효기간(정령 계2조)

○ 정령에 의해 개별 특정전기용품별 3년 내지 7년으로 규정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 처분에 위반하여

인정검사기관과 승인검사기관의 차이점

- 기관능력은 동일함.
- 관리기준 및 벌칙은 법률 및 운영측면에서 다름.

- 케이블류 및 코드류
- ♦ 퓨우조류
- ㅇ 배선기구
- 전류계한기류
- 단상소형변합기류 및 방전등용안정기류
- 전열기기류
- 전동력용용기기류
- 전자기기류
- 교류용전기기기류
- 휴대발전기류

다. 지정기준(법 제31조, 42조의 3)

- 충분한 재무, 회계 기초 및 기술적 능력
- 적합성평가기관의 독립성
- 적합성평가의 공정성 지정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ISO/IEC Guide 25 및 65와 같은 국계적인 가이드를 기초로 함
- 라, 지정기준 결격사유(법 제30조, 42조 지난 2년동안 다음의 벌금형에 처해 있는

발금청을 받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

- ㅇ 이 법에 의거 지정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ㅇ 그 업무를 행하는 임원을 가지고 있는 법인 으로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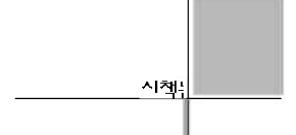
나. 지정범위(경계산업성령 제18조, 라. 인정갱신(법 제32조, 42조의 3)

○ 지정갱신은 매 3년마다 실시

마, 인정/인증검사기관의 관리기준

- 1) 인정검사기관(일본 기관)
- 적합명령(법 제40조)
- 개선명령(법 제40조의2, 52조)
- 인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41조)
- 보고서 계출명령(법 계45조)
- 통상산업대신에 의한 출입검사(법 계46조)
- 벌칙(법 제57조, 58조, 59조, 60조, 61조)
- 2) 승인검사기관(외국 기관)
- 적합요구(법 계42조의3)
- 개선요구(법 계42조의3)
- 승인취소(법 제42조의3)

위에서 서술된 일본의 전기용품안전계도와 관련 된 전기용품안전법, 정령, 경계산업성령, 기술기준 세. 최 및 지침, 평가기준은 일본 JETRO's web site (http://www3.jetro.go.jp/se/j/jousa/kikaku/jpbo ok/index.html)를 방문하면 자료 입수가 가능하고 -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 일전기용품 전기용품



품목 비교(부록 1) 및 일본 인정/승인검사기관 현황(2002,7,30현재 : 부록2)을 첨부하였으므로

[부록 1]

한 - 일 전기용품

일본 안전인증제도변경에 따른 혼선 및 대일본 수 동경에서 개최될 예약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 자료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한 · 일 전기용품 안전인증 MRA 전문 · 통하여 정보 제공할 가 회의(정보통신기기분야 포함)가 2002, 10월경 · 를 기대합니다.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 신 자료에 대하여는 통하여 정보 제공할 를 기대합니다.

한국(건기용품안건관리법) 정인 바, 용0% 설7#차완압사학된 최	
인터 뜻 첫 12 원 원 경우 19 1	특경건기 용품(1)
변 에 전한으로 전환을 확고함되었다. 2003년7월1일 적용 가. 합성수지 절연개를 사용한 것 (1) 절연건선 (2) 케이블 (3) 코드류 나. 고무 절연개를 사용한 것 (1) 절연건선 (2) 케이블 (3) 코드류 (4) 용접용케이블 (5) 실리콘 절연건선 (6) 에밀렌비날아세테이트 고무 케이블 다. 건원코드 세트	○

한국(건기용품안건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국계기준분류품목(229품목)	특정건기용
국제기단문규금학(22)급학) 2. 전기기기용 스위치(10품목) 2002년7월1일 작용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일반스위치(아이크로스위치, 로터 리스위치, 레버스위치, 무지풀스위치, 자동복귀스위치 등으로 기기 안에 조 집의어 사용되는 것) (2) 코도스위치 나. 전기기기용 차단기 다. 전자개폐기 비교) 2차회로제어에 사용하는 것과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개패시티(3품목) 2002년7월1일 작용 가. X・Y 캐래시터 나. 전파장해약계용 전원뿐터 다. 형광통용 캐패시터 비교) 100Hz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우유유유 유 유 우 오 이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 램프용리

시책는

한국(건기용품안건관리법) 2000년7월1일 사행	
국계기준분류품목(229품목)	특정전기용품(1
국제기준분류품목(229품목) 4. 건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4품목) 2002년7월1일 작용 가. 상호연결 커플러 나. 플러그 및 콘센트 (1) 일반돌러그 및 콘센트 (2) 퓨즈내장형 플러그 (3) 기기의 콘센트 (4) 스위치내장콘센트 (5) 어댑터 (6) 인터록 및 스위치내장콘센트 다. 교정 건기설비용 스위치 (1) 일반스위치 (2) 건자식 스위치 (3) 리모트론트를 스위치 (4) 시간지연 스위치 라. 케이블 릴 비꼬)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특정건기용 품(1) 그 박기 의 학자 기 기 의 학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3. 전기공품 포포공구품(8품약) 2003년7월1일 적용 가. 소형퓨즈 및 퓨즈홀더 나. 저전압퓨즈	건자응용기계기형광등용안정기수온등용안정기합 방건등용 ?
다. 온도퓨즈 라. 배선용차단기 마. 누전차단기	 오존발생기용인 전열기구(15품분 전기변착 전기운장고 수도통결방지기

한국(건기용품안건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국계기준분류품목(229품목)	특정건기용품
6. 절연면압기(3품목) 2002년7월1일 적용 가. 건압조정기 나. 가정용 소형면압기 다. 교류어댑터 비교) 정적용량 5kVA 이하의 것으 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 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유리성에제기 기타 동결 ! 지용 전열기구 ~건 건열식출임기 건지나스팅바스 건기사우나비스 관상식물용하는 관상식물용하는 건열식장난건
2001년7월1일 적용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이 다. 전기탈수기 라.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아. 전기레인지·전기오분기기 바.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 아.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 아. 전기보스터·그릴 자. 전기보스터·그릴 자. 전기보온기 차. 최건형 전기건조기 차. 전기보온기 타. 전기프라이땐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기 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막서, 후드막서, 전기 녹즙 기 등) 하. 전기액체가설기기 및 밥	 ○ 전등목의 ○ 전기우물목 ○ 전기우물로 펌프 ○ 냉장용소크자 ○ 내장용소크자 ○ 다스포 맛사지기 ○ 자용판단기기 ○ 관상어 전기기 ○ 전기차 전등 ○ 전기차 전등 ○ 건기차 전등 ○ 건기차 전등 ○ 기가 ○ 건기차 전등

한국(건가용품안건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특정건기용품(

국계기준분류품목(229품목)

솔류(건기밥솔, 건기보온 밥솔, 건 기주건자, 건기냉비, 전기물끓이기, 건기약당기, 커피데이커, 건기스 팅쿠커)

- 거. 전기담요·전열대트(건기방식, 전 기요, 전기대트, 전기카쩻, 전기 강판, 전열보드, 전기뜸질기, 전 기침대)
- 너. 전기온수가
- 더, 외부 및 모발관리기(건기 머리인
- 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 러. 전기냉장·냉동기기(냉장·냉동 기기, 콤프레셔로 구동되는 계방 기 등)
- 머. 전자레인지
- 버. 건가시계
- 서. 적외선 · 자외선방사 피부 관리기(의료용을 계외)
- 어. 가정용 전통채봉기
- 저. 전기충전기
- 처. 전열기가(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 커. 레인지후드
- 터. 건가 맞사지가
- 퍼, 건가 순간은수가
- 허. 냉방기 및 계습기
- 고, 유체펌프
- 노. 전기건조기
- 도 전기 프레스기(바지 프레스기, 주 름피기, 다림질 프레스)
- 로 건기 가열기기(남땡인두,

한국(건기용품안건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국계기 준분류품목(223)품목)	특정전기 용품
남땡계거인두, 권충형남땡기, 열 가소성 도관용집기, 가정용 필 름용집기, 플라스틱질단기, 폐인 트 계거기, 가열충, 권충형 아크 집착기) 모. 전기온장교 보. 구강청결기(건동칫술, 구강새 추기) 소.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스템바 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 스용 전열기, 스템바스용 전열 기) 오. 전기표면세착기 조. 어항 및 연못용 전기기기(판상 어용 하태, 판상어용 기포발생 기, 전기기포 발생기) 초.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强름스 트립 투영기, CHP, 필름투영기) 코. 아이스크림프리저 토. 전격살충기 포. 옥조용 전기기포발생기 호. 축열식 전기난방기 구. 공기청정기 누. 주방용 전기기계(전기육질기, 전 기고기잘개, 전기국수계조기) 두. 차용판대기 및 전기생수기 루.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 무.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 조식변기, 전기면좌)	

한국(전기용품안건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국계기준분류품목(229품목)	특정전기용품
부. 가슴기 수. 전기분무기 우. 기타 가목 내지 수목과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소비건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동용구(17품목) 2003년7월1일 적용	
가. 전기도로 나. 전기도라이버 다. 전기그라인다 및 포리셔 라. 전기센터 아. 전기원형품 바. 전기행어 사. 전기음숙가위 아. 전기에이퍼 자. 전기정봉통 차. 전기진용기 카. 전기진임기 라. 전기대폐 파. 전기간디짝기 하. 건기못충 아. 기타건등용구(라우터, 트리밍기 등의 것)	
비끄) 경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국계기준분류품목(229품목)	특정전기 용
9. 오디오 · 비디오등용기기(25품목) 2001년7월1일 적용 텔레비견수상기 · 모니터, 비디오테이 프 플레이어, 안테나 중폭기, 비디오카데라, 듀너,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기, 앵프 및 리시버, 음성기록계 및 플레이어, 오디오 시스템, 앵프내장형 스피커, 건자악기, 위성방송 수신기, 직류건원장치(오디오 및 비디오용용기기 건원용급용), 게임기구, 비디오폰, TV 영상프로젝터, 음질조절기, 오디오프로세서, 디지털/아나로그 변환장치, 음성분배기, 콤프레서게이트	◇ 전자응용기 (1품목)○ 고주파탈모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을 계외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로 분류되 는 비디오 응용기기로서 시험·검사기 관공인계도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기 관에서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계한 다.	◇ 기타교류용 기구(4품목 - 자기치료기 - 전격살충기 - 전기치료욕: - 꼭류전원장: ◇ 휴대발전기 - 휴대발전기
10. 정보·사무기기(영품목) 2001년7월1일 적용 모니터(키보드가 있고 비디오시그널코벡터가 없는 것, 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인 것 또는 브라운판이 2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프란터(소비건력이 600W 이하의 것에 한하여, 바코드, 영수중, 통장, 프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인 것을 계외한다),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 목류건원장의 (교류건원장의 와 겸용하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법) 2000년7월1일 시행	일본(전기용품안전법) 2001년 4월1일 시행	
국계기준분류품목(223)품목)	특정전기 용품(112품 목)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340품목)
것을 포함하고, 정적용량이 1kVA이하인 것), 무정전전위장치(정적용량이 5kVA 이하인 것), 스캐너, 지폐계수기, 전자 저울, 음건등록기로 한다.		
비교)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계외하여,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서 시험·검사기관공인계도에 의하여 인 정받은 시험기관에서 건자파적합등록 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계한다.		
11. 조명기기(15품목) 2003년7월1일 적용		
가. 형광램교용 글로우스타터 나. 램포소켓 다. 형광동용 소켓 및 스타 터소켓 라. 조명기구 아. 방건램프형안정기 바. 형광동용 안정기 사. 형광동용 전자식안정기 아. 형광당용 전자식스타터 자. 형광램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차. 박열전구 타. 네온변압기 파. 조명기구용 컨버터 하. 건기소유기(살균등으로 사용하는 것)		

[부록 2]

일본 인정검사기관 지정현황

(2002. 7. 30 현재)

(2))2: 1: 3) [**************************************
기관명	지정범위	주 소	건 화
Japan Electrical Technology Laboratories (JET)	체이블류 및 코드류 ボ우즈류 해선기구 전류계한기류 단상 소형면압기류 및 방건등용안정기류 전열기기류 건동력응용기기류 전자기기류 기타교류용건기기기류 하대발전기류 하대발전기류	5-14-12 Yoyogi, Shibuya-ku, Tokyo 15-8545 Japan	+81-3-34 66- 9203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JOA)	# 1. 배선기구 # 2. 단상 소형면압기류 및 방건등용안정기류 # 3. 전열기기류 # 4. 전동력응용기기류 # 5. 전자기기류 # 6. 기타교류용건기기기류 # 7. 휴대발건기류	1-9-15 Akasaka, Minato-Ku, Tokyo, 105-0052 Japan	+81-3-341 6 -5551
Japan Electric Cable Technology Center, Inc. (JCT)	1. 케이블류 및 코드류	1-4-4, Shinmiyekoda Hamamatsu-Shi, Shizuoka Prefecture, 431-2103, Japan	+81-53-428-4681
TUV Rheinland Japan Ltd.	 단상 소형변압기류 및 방건등용안정기류 건열기기류 건동력응용기기류 기타교류용전기기기류 	3-19-5 Shinyokohama, Kitarku, yokohamarshi, Kanagawar-Prefectu re, 222-0033, Japan	481-45-470-1891

기관명	지정병위	푸 소	건 화
Cosmos Co., Ltd.	 전류계한기류 단상 소형면압기류 및 방건등용안정기류 건열기기류 전동력응용기기류 전자기기류 기타교류용건기기기류 휴대발전기류 	319 Akeno, Obata-cho, Watarai-gun, Mie-Prefecture 519-0501, Japan	+81-5 96- 37-0190
A~PEX International Co., Ltd.	1. 단상 소형변압기류 및 방건등용안정기류 2. 기타교류용전기기기류	4383-326, Asama-cho, Ise-shi, Mie-Prefecture 516-0021, Japan	+81-59 0- 24- 6 717

외국 승인검사기관 지정연황

(2002. 7. 30 현재)

기관명	시경범위	추 소	전 화
Underwriters Laboratories Co., Ltd.	 케이블류 및 코드류 퓨우즈류 배선기구 건류계한기류 단상 소형변압기류 및 방건동용안정기류 전열기기류 건통력응용기기류 건자기기류 기타교류용건기기기류 휴대발건기류 	333, Pfingsten Road Northbrook, IL 60062-2096, USA	+1-847-272-88(0)
UL International Demko A/S	 케이블류 및 코드류 배선기구 단상 소형변압기류 및 방건몽용안정기류 전열기기류 전동력응용기기류 기타교류용건기기기류 	Lyskaer 8 P.O. Box 514 DK-2730 Herlev Denmark	+45-4485-62 51

